

## 유비쿼터스 시대의 장애인 정보접근에 관한 법제도

이필재

---

---

유비쿼터스 사회의 정보화 격차는 장애인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데 상당한 심각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갖추어진 곳과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의 위기관리 대처 능력은 현격한 차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등한 위기대처 환경을 향유하여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보격차 해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즉 개선방안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정보격차 그리고 공간격차의 해소를 하나의 프로그램적 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주관적 공권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 혹은 유비쿼터스화의 정책과 함께 이러한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고려되어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헌법상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정보화 격차, 장애인, 정보접근권,

---

---

### 1. 들어가는 말

정보화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과 컴퓨터, 그리고 사물이 하나가 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가 목전에 있다.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서 접속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의 주변 환경과 사물 안에 컴퓨팅과 네트워킹 기능을 포함시켜 사물과 공간, 인간,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어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또는 환경을 의미한다. 즉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기기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컴퓨터에 연결해 각종 정보를 얻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가 공간과 융화 되는 제3공간에서 정보격차는 바로 공간격차로 직결된다. 유비쿼터스 혁명으로 인하여 초래될 공간격차는 산업혁명으로 초래된 도·농 정보격차에 견줄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정보격차는 순기능 측면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반면, 다른 한쪽에는 역기능의 악순환을 초래한다(하원규 외, 2002: 279). RFID 등의 센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유비쿼터스 도시는 역동적이고 지능적이며 생산적인 공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을 갖춘 유비쿼터스 도시로 모여들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농촌이 공동화되었듯이, 유비쿼터스 도시와 기

존 도시의 공간격차가 급격히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의 이러한 정보화 격차는 장애인계층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데 상당한 심각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갖추어진 곳과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의 위기관리 대처 능력은 현격한 차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등한 위기대처 환경을 향유하여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유비쿼터스 사회의 특성과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정보격차 및 공간격차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장애인 정보격차의 정책 및 법률 현황을 살펴본 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장애인 정보격차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유비쿼터스 사회와 정보접근

### 1. 유비쿼터스 사회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말은 라틴어 *ubiquitas*를 어원으로 하는 용어으로써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물, 공기와 같은 자연환경처럼 도처에 존재하는 것, 신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종교적 이상을 상징할 때 사용된다.

이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는 1974년 네덜란드의 한 세미나에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MIT대 교수가 한 세미나에서, “우리는 유비쿼터스적이고 분산된 형태의 컴퓨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컴퓨터라는 것이 장난감, 아이스박스, 자건거 등 가정내 모든 물건과 공간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마크 와이저(Mark Weiser)는 1988년 제록스의 팰러앨토 연구소(PARC: Palo Alto Research Center)에서 일할 당시 이전의 유비쿼터스 개념을 새로운 패러다임 이상의 것으로 발전시켰다. 마크 와이저는 유비쿼터스컴퓨팅(UC: Ubiquitous Computing)이란, 네트워크 기반의 확장형 컴퓨팅 환경을 의미하며, 모든 사물의 컴퓨터화가 되어지는 컴퓨터 패러다임의 제3의 물결로서의 유비쿼터스 시대 즉,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Weiser, 1993: 75-84)<sup>1)</sup>. 실질적인 의미의 유비쿼터스 연구는 1988년이 시작이라 할 수 있으나, 이미 1966년에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의 개념 중 하나인 ‘웨어러블 컴퓨팅(Wearable Computing)’에 대한 연구가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웨어러블 컴퓨팅 연구는 모든 사물에 네트워크와 컴퓨팅 기능을 심어서 인프라를 구성하는 개념은 아

1)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 1991년 9월호의 논문에서 “미래의 컴퓨터는 우리가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형태로 생활 속에 점점 파고들어 확산될 것이다. 한 개의 방에 수백 개의 컴퓨터가 있고, 그것들이 케이블과 무선 양쪽의 네트워크로 상호 접속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다.

니었으나, 인간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도구의 하나인 의류에 컴퓨터를 넣으려 시도했다는 것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후에 실질적인 유비쿼터스컴퓨팅 기술에 대한 연구는 제록스 팰러앨토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유비쿼터스 사회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손쉽게, 편리하게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5C의 5Any)<sup>3)</sup>’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RFID/USN협회, 2008: 26). 즉 공기처럼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팅이 항상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 2. 유비쿼터스 환경의 특징

‘유비쿼터스’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존재 한다는 의미이다. 즉, 시공간을 초월한 ‘도처에 존재하는’ 편재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는 사람들이 모든 공간, 모든 환경속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작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모든 이용하는 기기와 사물에 소형칩이 내장되어 사람들은 주위 환경과 여건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인 제3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이필재, 2009: 7).

사람들은 모바일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집안의 홈네트워크를 통한 가전기구나 사무실 기기를 통제할 수 있으며, 사물이나 상황, 환경에 관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이 다루는 모든 기기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진행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진다.<sup>4)</sup>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의 특징은 기기의 은닉성, 정보의 창조성, 고유한 식별성, 고도의 추적성이라는 기술적 특성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하원규 외, 2002: 155)<sup>5)</sup>.

- 2) 1988년, 제록스의 팰러앨토 연구소의 마크 와이저는 세 편의 논문을 통해 ‘유비쿼터스컴퓨팅’ (ubiquitous computing), ‘보이지 않는 컴퓨팅’ (invisible computing), ‘사라지는 컴퓨팅’ (disappear computing)이라는 유비쿼터스컴퓨팅의 기본적인 철학 개념을 제안했다.
- 3) 5C는 Computing, Communication, Connectivity, Contents, Calm을 의미하며, 5Any는 Anytime, Anywhere, Anynetwork, Anydevice, Anyservice를 의미한다.
- 4) 사람들은 언제든지 쉽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업데이트 되어가는 신선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또한 어디에서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과 환경을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을 하며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원격조정 할 수 있게 된다.
- 5) 또한 마크와이저 뒤를 이어 유비쿼터스 개념을 발전시킨 프리드만 매턴(Friedemann Mattern)은 유비쿼터스의 특징으로 다음의 네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네트워크에 접속되어야 한다.” 무선을 통하여 모든 기기들이 연결이 되어 어느 곳에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나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에 반하여 일본에서 제안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는 휴대단말기를 통하여 어디에서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약간은 다른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컴퓨터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 주변 물리적 환경속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컴퓨터 활용도가 증가하지만, 사용자가 컴퓨터가 존재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컴퓨터 칩 설계, 네트워크 프로토콜, 입출력 장치, 응용프로그램, 프라이버시 같은 모든 컴퓨터 분야의 연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주변 환경에 숨어 있는 컴퓨터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일들을 하지만 사용자는 자기

첫째, 이용자는 시간, 장소, 사물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러한 환경은 현재 책상 위의 PC 뿐만 아니라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나 트래킹 디바이스 등 컴퓨터가 아닌 모든 기기와 사물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나 항상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대용량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즉,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사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환경이 된다.

둘째, 생활 속의 모든 사물과 기기들에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치가 심어져 이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상황인지 시스템)을 갖는다. 따라서 스스로 정보를 처리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정보의 통합가능성 및 개인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셋째, 이용자들은 원거리의 사물과 환경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 변화에 실시간으로 이를 추적, 지각할 수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원거리의 사물과 환경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즉, 실시간의 신선한 정보를 유통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진해지는 법이다. 산업혁명을 통하여 해가 지지 않는다는 제국을 건설한 영국의 그늘 속에서 소외받는 노동자들과 식민 국가들이 있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혁명도 마찬가지다. 저절로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하원규 외, 2002: 278). 유비쿼터스 혁명은 엄청난 지각변동과 공간구조의 중첩을 불러온다. 과거의 공간구조를 지배하던 질서체계도 급격히 변화한다. 과거의 공간구조 속에서 생활을 꾸려온 사람과 사람들 간의 질서체계는 급격히 변화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혁명에 의해 창조되는 제3공간으로 인하여 새롭게 드리워지는 그림자는 21세기의 근본적인 대응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그림자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의 격차와 공간의 격차로 볼 수 있다.

### 3. 유비쿼터스 사회의 정보격차의 문제

#### 1) 정보격차의 개념

정보소유의 차이로 보는 관점의 정보격차는 정보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자 간의 차이, 즉 정보소유에 있어서의 빈부격차를 의미한다. 반면 정보역량의 차이로 보는 관점의 정보격차는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에의 접근 및 활용에 있어서의 개인 간 차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와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김도일·도수관, 2005: 344).

---

스스로 어떤 일을 했다고 느낄 정도로 컴퓨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셋째, “현실세계 어디서나 컴퓨터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가상현실이 아닌 현실세계에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증강현실이 되어야 한다. 넷째, 사용자 상황(장소, ID, 장치, 시간, 온도, 명암, 날씨 등)에 따라 서비스가 변해야 한다.

우선, 정보격차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격차를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갖지 못한 자'의 측면(digital divide)을 강조하여 조명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Van Dijk & Hacker나 Peter & Valkenburg가 지적하듯, 이제 인터넷 이용 내용측면에서의 차이를 반영한 정보 차이(digital differentiation) 측면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누가 정보를 이용하는지 이용하지 않는지의 차원을 넘어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지 왜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보의 접근 문제보다는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지로 관심이 이동한 것과 맥락이 다르며, 나아가 정보이용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정보 이용의 유인책을 밝힘으로써 정보화의 성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55).

## 2) 장애인 정보격차의 문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인류의 의식과 생활의 환경을 급속도로 변화시켰고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인 정보화 사회를 가져왔다. 이상적인 정보사회의 실현은 개개인의 인지, 태도, 가치관 및 행동의 변화와 새로운 정보환경의 변화가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보급과 이용이 촉진 활성화되면서 그에 따른 역기능 현상인 정보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고, 정보격차 해소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사회복지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정보문화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81).

현재 정부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 일반국민과 취약계층간 정보격차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정보 이용능력과 활용수준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정보의 활용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sup>6)</sup>.

또한 유비쿼터스 사회의 본격적인 도래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기존 정보격차와 더불어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새로운 정보격차가 증첩되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68).

정보사회의 정보격차가 개인 또는 계층차원의 문제였다면, 유비쿼터스 사회의 공간격차는 지역 또는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즉 개인 차원의 정보격차에 비해 공간적으로 격리된 공간격차는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유비쿼터스 혁명으로 초래될 공간혁명은 산업혁명에서 도시공간이 농촌을 소외시켰던 것과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공간적으로 격리된 공간격차는 한쪽에는 무한한 사회경제적 혜택이라는 선순환을 가져오는 반면, 다른 한쪽에는 사회경

6) '08년도 정보격차 지수 산출결과, 취약계층의 접근 부문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89.7%인 반면, 역량 및 활용 부문은 일반국민의 각각 45.7%, 53.1% 수준으로 나타나, 컴퓨터·인터넷 접근 가능정도 및 보유 여부와 연관된 정보접근 격차보다 정보 활용능력·활용량·활용유형(사용의 질)과 연관된 정보활용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제적 배제라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초래된 도농격차가 농촌을 공동화시켰듯이,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센서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된 지능적이며 생산적인 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공간과 그렇지 않은 도시와 지역의 정보격차가 급격히 벌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고급스러운 공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제3공간으로 몰려들 것이며, 제3공간이외의 지역들은 공동화될 것이다 (장주병, 2004: 30).

이러한 불평등 구조의 악순환은 결국 정보사회보다 유비쿼터스 혜택을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유비쿼터스 정보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소수 특권층만이 유비쿼터스 혜택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제3공간의 불균형 구조로 인한 유비쿼터스 사회 성장에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sup>7)</sup>

장애인과 노인 등은 정보사회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과 저소득이라는 이중적 유비쿼터스 정보격차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컴퓨터가 수단인 정보사회보다는 컴퓨터가 환경이 되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의 정보통신기기 접근성(accessibility)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기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한계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 자체로부터 근본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 및 생활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애인과 노인 등은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보격차의 추세는 지식 격차설을 기반으로 하는 비판론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미디어가 사회계층 간의 지식격차를 축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확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이미경 외, 2008: 98).

이러한 장애인계층의 정보격차 현상의 문제는 기술적 문제보다는 행정적 문제로 파악 하여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과 사물, 컴퓨터가 하나로 통합되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정보격차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유비쿼터스 기기와 서비스가 공공재화 및 보편적 서비스가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사회적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의 유비쿼터스 희생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III. 정보격차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 1. 장애인 정보접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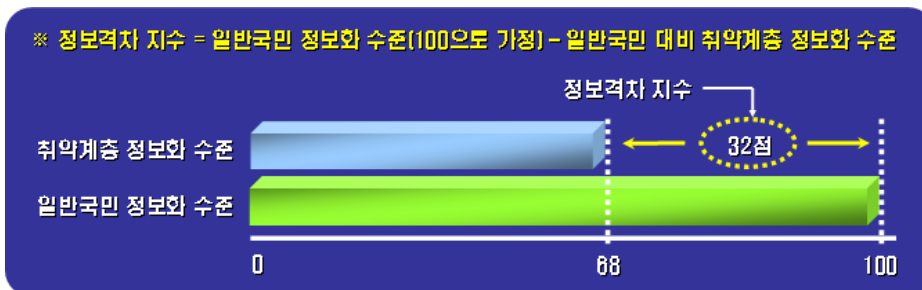
7) 유비쿼터스 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유비쿼터스 혜택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더 강한 선순환구조뿐만 아니라 악순환 관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보화를 통해 개방적·수평적·분권적 사회가 형성되는 가운데, 신체적, 사회적 특징 등에 따른 정보화 수준 차이가 각종 기본권 향유 차이를 고착시켜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수립하여 많은 성과를 보였다.

우선, 지역적, 신체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까지 초고속망을 99.8% 구축하고, 농어촌 등의 취약지역에 정보 공동이용시설 설치하였다. 또한 중고PC를 194,771대를 보급하여, 이 사업이후, 취약계층 가구 PC보유율이 2004년 48.7%에서 2008년 65.1%로 16.4%p 상승하는데 일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신중계서비스(TRS) 제공, 다양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구축 및 시각장애인자료 종합목록DB 구축 등으로 장애인의 정보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였고, 웹 정보 전달의 효율성 및 웹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웹접근성 표준화 및 접근성 준수지침 제작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덕분에 2008년 현재, 정보소외 계층의 웹 접근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89.7%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정보의 활용은 접근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2008년까지 장애인, 고령자, 비문해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수용자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소외계층 3,087,340명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장 집합, 온라인 등의 형태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이 2004년 24.9%에서 2008년 41.7%로 16.8%p 상승하는데 일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보이용격차는 정보접근격차에 비하여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어서, 2008년 현재 소외계층 정보역량지수는 일반국민의 45.7%이다.

2008년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sup>8)</sup>. 일반국민과 취약계층간의 정보격차 지수의 경우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 계층간의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

〈그림 1〉 정보격차 지수 (자료수집기간 : 2008년 9~12월)

8) 정보격차 지수란,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여 일반국민과 정보취약계층간 상대적 격차 산출한 것이다. 정보격차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0(점)에 가까울수록 정보격차가 개선된 것을 의미하며, 또한 정보격차지수 = 일반국민 정보화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수준 이다.

취약계층별 인터넷 이용률은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저소득층 54.6%(전년대비 1.8%p ↑), 장애인 51.8%(전년대비 1.9%p ↑), 장노년층 35.6%(전년대비 1.5%p ↑), 농어민 35.2%(전년대비 1.8%p ↑)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국민과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매년 감소 추세이며, 2004년 전체국민과의 격차인 45.3%p에 비해서는 9.9%p 감소하였다(김은정·이재웅, 2009: 12).

<표 1>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및 격차 추이(단위 : %, %p)

구 분		2004년		2008년	
		이용률	격차	이용률	격차
전체 국민		70.2	-	77.1	-
취약 계층	장애인	34.8	35.4	51.8	25.3
	장노년층	19.3	50.9	35.6	41.5
	저소득층	38.4	31.8	54.6	22.5
	농어민	16.9	53.3	35.2	41.9
	평균	24.9	45.3	41.7	35.4

출처: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

그리고 취약계층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004년 이후 매년 상승하여 2008년도에는 65.1%로 전년대비 1.7%p 상승 했다. 취약계층별 가구 컴퓨터 보유율은 장애인 70.7%(전년대비 0.8%p ↑), 저소득층 63.1%(전년대비 1.8%p ↑), 농어민 57.4%(전년대비 2.4%p ↑) 수준이다.

<표 2> 취약계층 가구 컴퓨터 보유율 및 격차 추이 (단위 : %, %p)

구 분		2004년		2008년	
		보유율	격차	보유율	격차
전체 국민		77.8	-	80.9	-
취 약 계 층	장애인	62.3	15.5	71.0	9.9
	저소득층	49.9	27.9	63.1	17.8
	농어민	35.8	42.0	57.4	23.5
	평균	48.7	29.1	65.1	15.8

출처: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

## 2. 정보화 정책 및 정보격차해소 정책 현황

### 1) 정보화 정책의 현황

우리나라의 정보화 과정은 산업과 과정만큼 매우 빠르고 인상적이었다.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 아래 역대 정부는 다양한 정보화정책을 통해 국가의 정보화를 주도해 왔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1996년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서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전자상거래법이나 전자정부법 등 정보사회에 대비한 각종 법제도 정비라는 인프라의 구축과 핵심 콘텐츠로서의 행정, 산업, 지역 및 생활 정보화 등이 균형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Cyber Korea 21」은 본격적인 지식기반경제의 등장에 적극 대응하고 인터넷의 보편화와 디지털 경제를 촉진시켰다.

2002년은 「e-Korea Vision 2006」 초고속인터넷 연결 가구 수가 1,000만 명을 넘고 이동전화의 이용자 수가 3,000만 명으로 국가사회 전반에서 PC와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되던 시기에 정보통신 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2003년은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실천과제로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IT분야의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및 9대 성장동력을 의미하는 IT-839 전략을 적극 추진했다.

2006년은 「u-Korea 기본계획」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지능형 사회의 도래를 촉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u-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최초의 u-사회를 실현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따뜻한 지식정보사회의 건설과 u-IT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사회 전반의 선진화 달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9년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녹색정보화 추진계획’, ‘그린 IT 국가전략’ 발표하고,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확정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온 정보화 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가 부러워 할만한 정보통신분야의 선진국의 지위에 놓여 있다. 즉 정보화를 이끄는 능동적인 국가가 되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53)<sup>9)</sup>.

## 2)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현황

우리나라의 정보격차해소정책은 1996년부터 복지 및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주로 정보통신기기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1990년대 말까지 추진하였다.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에 따라,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이용시설 설치, 정보통신기기 보급 등의 정책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였고, 2006년부터는 제2차 종합계획에 따라 전체 국민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현재 71.1%에서 2010년까지 80%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범부처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84).

9)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전산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편익과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산망 구축으로 인해 발생한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로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아래, 매우 빠르게 정보화를 이룩하였고, 눈에 보이는 산출물로 디지털 기회지수 3년 연속 세계 1위(ITU 발표), E-Government 지수 세계 1위(브라운 대학 발표), 인터넷 이용률 세계 5위(ITU 발표),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세계 6위(OECD 발표)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화 정책과 정보격차해소의 정책은 대부분 분리 되어 시행이 되어 왔다. 바로 이런점에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화 정책의 수립시 이에 따르는 역기능의 해소 방안을 같이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역기능 해소 중 하나인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정책은 정보화 정책과 융화된 형태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

### 3. 관련 법제 현황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지난 10여 년간 성장과 고용을 주도할 새로운 산업분야로 정보통신과 정보산업의 진흥을 강조하는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의 진행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지역적·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한 정보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고, 연령별, 소득별, 학력별 정보격차가 계속 확대되게 되었다.

####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7년 4월에 제정된 이 법률에서는 '정보에의 접근권보장' 등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통신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접근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 (1) 접근권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4조).'고 규정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초한 정보접근과 이용권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 (2) 편의시설의 범위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라고 규정하여(동법 제2조), 편의시설의 범위에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나 설비 등을 명백히 밝혀 두고 있다.<sup>10)</sup>

10)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 등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주변기기, 정보통신기기(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 프로그램,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 입력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다. 본 법의 정보접근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20조)

### (2)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1조).

### (3)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마련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3조).

### 3) 국가정보화 기본법

2001년 1월에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핵심조문들은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을 다루고 있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장제1절로 이관되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련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 (1) 정보격차 해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통신서비스 접근과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1조).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지식정보사회의 필수요소인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을 권리로 보장하고 정보격차 해소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일반국민의 정보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정책의 입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2)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과 고령자가 차별 없이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들에게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관련 산업과 시장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보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공시장 역할을 위하여 공공기관에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과 이용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서비스 제품을 우선 구매할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동법 제32조).

#### (3)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마련과 이들에 대한 콘텐츠 제공사업자, 정보통신개발·생산자 및 관련기술 개발·보급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32조, 제33조).

#### (4)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주민 등에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혹은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4조).

#### (5) 예산지원

정보격차해소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사업을 국가예산·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1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능의 다수 부처로 분산 및 정보화 관련 법제의 대대적 개편을 통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이관이 되었다.

36조).

이렇듯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정보격차해소의 기본원칙, 시책강구, 보편적 서비스 제공, 정보격차해소기술 개발·보급, 정보격차해소교육 실시, 재원확보 등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주요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보장의무 및 정보격차해소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조항 신설, 정보격차해소 추진체계 강화를 통해 정보소외계층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독립적으로 수립·추진되는 정보격차해소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정보화 비전·기본방향 등과의 연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IV.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개선방안

앞에서 현행 정보격차의 현황을 보았듯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관련법률과 다양한 정책의 시행을 통해 매년 정보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령만으로는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장애인의 범위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의 개념설정이 너무 협소하며 이를 설정 하는 기준 또한 충분하지 못하여 적용대상 장애인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장애로 인한 단기적·일시적 영향이나 장애의 사회적 요인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이철호, 2008: 162).

##### 2.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확대

현재의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누가 정보를 이용하는지 이용하지 않는지의 차원을 넘어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지 왜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보의 접근 문제보다는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지로 관심이 이동한 것과 맥락이 닿으며, 나아가 정보이용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정보 이용의 유인책을 밝힘으로써 정보화의 성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3.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법적 성질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권장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관련법

를 등이 제·개정되어 일정부분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증진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보완할 것들이 있다(김남진, 2007: 153).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단순한 복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아닌 하나의 권리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이 프로그램적 규정의 선언적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공권성을 가지는 측면에서 하나의 강행규정의 의미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 4. 재활공학관련 산업활성화를 위한 법안

재활공학관련 산업활성화를 위한 법안 시급하다. 앞서 살펴본 장애인 정보격차 관련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관련법제와 정책을 통해서 매년 정보격차의 차이가 줄어들고는 있다. 하지만 재활공학의 도움 없이는 장애인 정보화의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현행 법률로는 정보격차의 해소에 어려움이 많다. 즉 대체접근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따라서 재활공학관련 법률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보화 서비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공을 위한 법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5. 공간격차의 해소

현재까지의 문제는 정보격차에 관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격차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좀 더 심각해 질 것이며, 이러한 정보의 격차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공간에 대한 격차문제로 확대되어 질 것이다. 따라서 공간격차에 대비하는 관련 법률의 제정 내지 기존 관련법에 포함하는 형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6. 정보화 정책과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융화

그동안 정보화 정책과 정보격차해소의 정책은 대부분 분리 되어 시행이 되어 왔다. 바로 이런점에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화 정책의 수립시 이에 따르는 역기능의 해소 방안을 같이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역기능 해소 중 하나인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정책은 정보화 정책과 융화된 형태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서 접속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의 주변 환경과 사물 안에 컴퓨팅과 네트워킹 기능을 포함시켜 사물과 공간, 인간,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어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또는 환경을 의미한다. 즉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기기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컴퓨터에 연결해 각종 정보를 얻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렇듯 유비쿼터스 사회가 형성되어 진다면 현재의 정보격차의 문제는 해소 되어 질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정보가 공간과 융화 되는 제3공간에서 정보격차는 바로 공간격차로 직결된다. 정보사회의 정보격차가 개인 또는 계층차원의 문제였다면, 유비쿼터스 사회의 공간격차는 지역 또는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즉 개인 차원의 정보격차에 비해 공간적으로 격리된 공간격차는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유비쿼터스 혁명으로 초래될 공간혁명은 산업혁명에서 도시공간이 농촌을 소외시켰던 것과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공간적으로 격리된 공간격차는 한쪽에는 무한한 사회경제적 혜택이라는 선순환을 가져오는 반면, 다른 한쪽에는 사회경제적 배제라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반듯이 생겨 날것이다.

앞서서 말한바와 같이 유비쿼터스 사회의 이러한 정보화 격차는 장애인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데 상당한 심각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갖추어진 곳과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의 위기관리 대처 능력은 현격한 차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장애인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등한 위기 대처 환경을 향유하여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기위해 서는 현재의 정보격차해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즉 개선방안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정보격차 그리고 공간격차의 해소를 하나의 프로그램적 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주관적 공권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 혹은 유비쿼터스화의 정책과 함께 이러한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고려되어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 정보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장애인은 헌법상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을 바탕으로 외국법제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한 비교법적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정보격차와 공간격차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정보격차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고민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대한 개념, 범위, 내용, 효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숙희. 2001.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4): 229-256.
- 김남진. 2007. 국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아동·지체부자유아교육. 50(1): 143-161.
- 김은정·이재웅. 2009. 2008 정보격차 현황 분석 및 제언. KADO 이슈리포트. 63.

- 김태일·도수관. 200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 분석. *사회복지정책*, 21: 341-364.
- 민경식. 2006.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정책 방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박병식. 2007. 장애인의 제도적 차별철폐와 법령정비 방안. *월간 법제*.
- 이준일. 2007.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미경 외 2인. 2008. 유비쿼터스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의 U-City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17(2): 95-112.
- 이민영. 2006.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신장에 관한 법적 연구. *정보화정책*, 13(1): 46-63.
- 이철호. 2007.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헌법학연구*, 13(4): 229-258.
- 이철호. 2008.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8): 158-175.
- 이필재. 2009. 유비쿼터스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충북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 장주병. 2004. 모두가 함께하는 유비쿼터스 사회구현을 위한 대응과제. *정보문화진흥원*. 이슈보고서.
- 정인섭.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 하원규외2인. 2002. 유비쿼터스 IT혁명과 제3공간. *전자신문사*.
- 한국RFID/USN협회. 2008. 유비쿼터스 지식능력검정. *한국RFID/USN협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교육의 미래 모습. *연구보고서*.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정보격차 현황 분석 및 제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 백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홍경순. 2006. 장애인의 정보화교육 및 정보접근성 현황. *지역정보화지*, 36: 30-36.
- Bolt, D. & Crawford, R. 2000. *Digital divide: Computers and our children's future*. New York, NY: TV Books LLC.
- Charles B. Lowry. 2005. Let's Call It the 'Ubiquitous Library' Instead. *Portal*, 5(3): 293-296.
- Mark Weiser. 1993. Some Computer Science Problems in Ubiquitous Computing. *Communications of the ACM*, July: 75-84.
- <http://www.law.go.kr/>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 [http://www.enisa.europa.eu/pages/01\\_05\\_01.htm](http://www.enisa.europa.eu/pages/01_05_01.htm)
- <http://www.privacyrights.org/ar/RFIDposition.htm>>

---

**李泌宰**: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정보학적 법학방법론”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하고 동 대학원에서 “유비쿼터스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2009. 2), 현재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며 충북대에 출강을 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헌법상의 정보기본권, 법정보학, 유비쿼터스 법제도,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정보화 법, 과학기술법, 소비자보호법 등 이다. 최근의 연구실적은 “u-Work 근무환경을 위한 법제도개선 연구(2006)”, “국내 생명공학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2008)”, “U-러

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2009)”, “유비쿼터스 환경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2010)” 등이 있다(lawncom@cbnu.ac.kr).

투 고 일: 2010년 2월 2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19일